

[덧붙임] 2023년 일부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변경 최종안내

- 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와 관련하여, ①기안내(2022.8.10.)한 일부 평가항목의 적용 세부기준 및 ②운영위원회 결과 추가적으로 변경될 내용(세부기준 완화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기안내한 내용

- 평가주기 단축(2년→1년)에 따라 관련 내용 변경

㉠ [공통] 평가대상기간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평가대상기간은 2020.01.01. ~ 2021.12.31.(2년)
↓	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평가대상기간은 2022.01.01. ~ 2022.12.31.(1년)

㉡ [A.2.2.2]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모든 지도요원(개인)별로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(16시간 이상) 전문화교육 이수
↓	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모든 지도요원(개인)별로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(8시간 이상) 전문화교육 이수

㉢ [A.2.2.3] 기타 외부 일반교육 이수 여부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최소 인정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, 4시간 미만의 교육을 다수 이수한 경우 평가대상기간 내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이상이면 이수한 것으로 평가
↓	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최소 인정 교육시간은 2시간이며, 2시간 미만의 교육을 다수 이수한 경우 평가대상기간 내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2시간 이상이면 이수한 것으로 평가

4 [A.3.2] 장비활용 실적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분야별 장비활용 실적 조합표			
	작업환경관리장비		6회 미만	6회 이상
	건강관리장비			8회 이상
	15회 미만		5	10
	15회 이상		10	20
	20회 이상		15	25


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분야별 장비활용 실적 조합표			
	작업환경관리장비		3회 미만	3회 이상
	건강관리장비			4회 이상
	7회 미만		5	10
	7회 이상		10	20
	10회 이상		15	25

5 [A.5.1] 최근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① 대통령상 : __건 × 5점
	② 국무총리상 : __건 × 4점
	③ 고용노동부장관상 : __건 × 3점
	④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: __건 × 2점
	⑤ 지차제장상 등 : __건 × 1점


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① 대통령상 : __건 × 10점
	② 국무총리상 : __건 × 8점
	③ 고용노동부장관상 : __건 × 6점
	④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: __건 × 4점
	⑤ 지차제장상 등 : __건 × 2점

6 [A.5.2]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업무정지 처분 __개월 × (-15)점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
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업무정지 처분 __개월 × (-30)점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㉓ [A.5.3] 최근 **1년** 이내 시정조치·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시정조치·경고 처분 __건 × (-2)점
↓	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시정조치·경고 처분 __건 × (-5)점

㉔ [B.1.1.8]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조언·지도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지도요원이 평가기간 중 수탁사업장을 대상으로 “1시간(2회)” 교육 실시 여부를 평가 - 평가대상기간 중 총 2회 실시 여부 평가
↓	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지도요원이 평가기간 중 수탁사업장을 대상으로 “ 1시간(1회) ” 교육 실시 여부를 평가 - 평가대상기간 중 총 1회 실시 여부 평가

㉕ [B.1.5]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최근 2년 이내 업무상질병 발생사업장을 우선 선정
↓	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최근 1년 이내 업무상질병 발생사업장을 우선 선정

㉖ [B.2.1] 업무상 질병 재해율 감소 성과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전전전년도(‘19년) 대비 전전년도(‘20년)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과 전전년도(‘20년) 대비 전년도(‘21년)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 평균
↓	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전전년도(‘21년) 대비 전년도(‘22년)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

○ 추가 내용

- 피평가기관의 노력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여 평가 세부기준 완화

① [A.2.2.1] 지도요원 교육·훈련 계획 수립·이행 여부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평가기준	평가점수
	교육·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모든 인력이 이행한 경우	☐ 20
	교육·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률이 60% 이상인 경우	☐ 10
	교육·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, 이행률이 60% 미만인 경우	☐ 0


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타 항목에서 이행률을 평가하고 있으므로, 해당 항목에서는 계획 수립의 적정성만 평가	
	평가기준	평가점수
	교육·훈련 계획이 적정한 경우	☐ 20
	교육·훈련 계획이 미흡한 경우	☐ 10
	교육·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	☐ 0

② [B.1.1.3]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(의사)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평가기준	평가점수
	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실시 및 실질적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	☐ 30
	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실시	☐ 20


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평가기준을 완화·세분화하여, 이행률에 따른 점수 차등 적용	
	평가기준	평가점수
	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실시 및 실질적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	☐ 30
	(단, 실질적인 사후조치가 80% 이상인 경우 27점 부여, 60% 이상인 경우 24점 부여)	☐ 27 ☐ 24
	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실시하였으나, 실질적인 사후조치 이행이 60% 미만인 경우	☐ 20

㉓ [B.1.1.6] 작업환경 개선지도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평가기준	평가점수
	선정사업장 모두 개선의견 제시 및 실질적 개선이 이행된 경우	☐ 40


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평가기준을 완화·세분화하여, 이행률에 따른 점수 차등 적용	
	평가기준	평가점수
	선정사업장 모두 개선의견 제시 및 실질적 개선이 이행된 경우	☐ 40
	(단, 실질적 개선이 80% 이상인 경우 37점 부여, 60%	☐ 37
	이상인 경우 34점 부여)	☐ 34

㉔ [B.1.1.8]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조언·지도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평가대상기간 중 총 2회 실시 여부 평가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
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평가대상기간 중 총 1회 실시 여부 평가 - 평가주기 단축(2년→1년)에 따라 관련 횟수 변경
-------------------	--

㉕ [B.1.2.3] 근로자 건강보호·증진활동 프로그램 지도

2022년(기존) 평가기준	평가기준	평가점수
	건강보호·증진활동 프로그램 지도에 누락이 없고 그 중 80% 이상이 실제 실시한 경우	☐ 20



2023년(변경) 평가기준	평가기준을 완화·세분화하여, 이행률에 따른 점수 차등 적용	
	평가기준	평가점수
	건강보호·증진활동 프로그램 지도에 누락이 없고 그 중 80% 이상이 실제 실시한 경우	☐ 20
	(단, 실제 실시가 60% 이상인 경우 17점 부여)	☐ 17

6 [B.1.4] 위험성평가 신청 및 인정률

2022년(기존)
평가기준

평가기준		평가점수
신청률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20% 이상인 경우	☐ 20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10% 이상인 경우	☐ 15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5% 이상인 경우	☐ 10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5% 미만인 경우	☐ 5
인정률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10% 이상인 경우	☐ 20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5% 이상인 경우	☐ 15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2% 이상인 경우	☐ 10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2% 미만인 경우	☐ 5

↓

2023년(변경)
평가기준

현실을 반영하여 비율 완화

평가기준		평가점수
신청률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5% 이상인 경우	☐ 20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3% 이상인 경우	☐ 15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1% 이상인 경우	☐ 10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1% 미만인 경우	☐ 5
인정률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3% 이상인 경우	☐ 20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2% 이상인 경우	☐ 15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1% 이상인 경우	☐ 10
	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1% 미만인 경우	☐ 5